

# 고용·임금확인서

피고용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고용성격 (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)			

고용기간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까지	
근로시간	일시간 오전	: ~ :	( 시간)
	일시간 오후	: ~ :	( 시간)
	주당 근로일수 :		일
	주 근로시간 : 총		시간

임금지급형태	일당제	1일 임금 :	원		
		월평균 고용일수 :	일		
	월급제		월분	월분	월분
		기본급			
		각종수당			
기타금액 (여비, 자동차유지비 등)					
	합계 금액				

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 <input type="checkbox"/> 미가입
-------------	--

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명 :

사업장주소 :

사업자등록번호 :

전화번호 :

(영업허가번호)

사업주명 :

(서명 또는 날인)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9조

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000만원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